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601

발의연월일: 2025. 2. 28.

발 의 자:김준혁・박수현・이수진

강경숙 • 진선미 • 권칠승

윤종오 · 김문수 · 황명선

황운하 · 김동아 의원

(119]

제안이유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으로 7개 과목(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을 규정하고, 응시자는이 중 1개 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목별로 학습량, 시험 난이도, 표준점수의 차이에 따른 유불 리가 있어 특정 과목에 응시자가 편중되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일선 법학전문대학원은 물론 변호사협회, 교육부, 법무부 모두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상황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의 폐지 또는 Pass/Fail로의 전환 및 학점이수제의 도입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변호사시험법」을 개정하여 선택과목에 대한 Pass/Fail 제도를 도입하고(안 제10조), 이와 더불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학점이수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시험 성적은 시험의 합격 결정 시 기준이 되는 총득점에 산입하지 않도록하고, 합격 여부만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10조).
- 나.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시험에 Pass/Fail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시험준비나 시험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일에 최소 1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함(부칙 제1조).
- 다. 변호사시험의 실시 시기와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발표 시기에 차이가 있고, 개정법의 적용 여부는 시험준비나 시험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법 시행 전 실시된 시험에 대하여는 시험의 합격 결정 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시행일에 관한 특례를 정함(부칙 제2조).

법률 제 호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제14조에"를 "법무부장관은 제14조에"로, "들어야"를 "들어 결정된 합격자 규모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필기시험"을 "필기시험(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시험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단서 중 "중"을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은 제외한다)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조윤리시험은"을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시험과 법조윤리시험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조윤리시험의"를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시험과 법조윤리시험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조윤리시험의"를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시험과 법조윤리시험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

실시된 시험에 대하여는 시험의 합격 결정 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10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 법 제10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 ---무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변호사시 ----법무부장관은 제14조에---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학 전문대학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민법」 제32조와 「공 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들어 결 정된 합격자 규모를 지체없이 공고<u>하여야</u>----. ② 시험의 합격은 선택형 필기 (2) -----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 -----필기시험(제9조 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적 법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한다. 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시험은 다만, 각 과목 중 어느 하나라 제외한다)-----도 합격최저점수 이상을 취득 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으 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

③ <u>‡</u>	<u> </u> 로윤리시학	험은	합격	여부
만을	결정하고,	ユ	성적은	- 제2
항의	총득점에	산역	입하지	아니
하다.				

④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 선택 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 내에서 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 각 과 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그 밖에 시험의 합격 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은 제
외한다) 중
③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
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시험과 법조윤리시험은
4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
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시험과 법조윤리시험의
-,